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대통령령 제362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를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